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42

발의연월일: 2021. 4. 27.

발 의 자: 박주민·김경만·민형배

박영순 · 용혜인 · 유정주

윤미향・아주진비・진선미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송환과 관련해 외국인이 탔던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송환하도록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운수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외국인의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고, 출국대기실을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대기실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인권침해 문제 및 대기실의 운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출국대기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운수업자에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

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6조).

법률 제 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출국대기실"이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 확보를 위해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 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를 "입국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송환을 지시한 때에는 그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 외국인을 지체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송환을 지시할 때에는 선박 등의 운항 계획, 승객예약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송환기한

- 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기한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송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제2조제16호에 따른 출국대기실에 머물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이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의 상태, 신청사유,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출입국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 및 안전대책에 관하여는 제56 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타고 온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그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명하는 경우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 외국인이 출작할 때까지 선박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 ⑥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 1. 제73조제1호, 제2호, 제4호를 위반한 경우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외국인이 제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대기실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 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송환시설 및 다른 사람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 ⑧ 제7항에 따른 강제력의 행사에는 제5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출국대기실"이란 지방출입 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 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 국인의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 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해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 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76조(송환의 의무) ① 다음 각 제76조(송환의 의무) ① 지방출입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 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다음 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 외국인의 송환을 지시한 때에 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는 그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 외국인 하다. 을 지체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삭 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2.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 <삭 제> 되거나 거부된 사람

3. 제12조제4항에 따라 <u>선박등</u> 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귀책사 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4. • 5. (생략)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등의 장이나운수업자는 제공되는 장소 또는 그 장소에 머무르는 외국인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3.	 	 	입국이
-	 	 	
-	 	 	

4. • 5. (현행과 같음)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송환을 지 시할 때에는 선박 등의 운항 계획, 승객예약 상황 등을 고려 하여 송환기한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 자가 기한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 하는 경우에는 송환기한을 연 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 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제2조 제16호에 따른 출국대기실에 머물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 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이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 설>

<신 설>

<신 설>

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따라 신청 인의 상태, 신청사유,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출입국항 내 의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한 조 건하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 및 안전대책에 관하여는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 를 준용한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대 기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출 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타고 온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에 게 그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명하는 경우 선박의 장이나 운 수업자는 그 외국인이 출국할 때까지 선박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 ⑥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 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 식비 등 관리비용은 국가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 설>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탔던 선 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부담한 다.

- 1. 제73조제1호, 제2호, 제4호를 위반한 경우
-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경우 외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외국인이 제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경우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대 기실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외국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설 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 거나 가하려는 경우
-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 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 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송환시설 및더른 사람의 안전과 질서를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하려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른 강제력의 행사에는 제5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